

달라진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 본 중재 절차

김 종 배

(전 제민일보 상무이사)

I. 머릿말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언론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보도를 통해 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의 여론을 구성원 전체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내용은 공익적이어야 하고 진실해야 하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은 언론의 기능으로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등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통제되거나 간섭돼서도 안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그 허가나 검열은 금지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시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함께 그 책임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태동시킨 정부가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신군부는 당시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보도를 부당히 간섭하고 통제했음은 물론이며 각 언론사에 내려보낸 ‘보도지침’이라는 문서를 통해 기사의 단수(段數)와 내용까지 결정하고 보도하도록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태동했다. 그후 언론기본법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탄생 동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일자 폐지됐으나,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반론권 제도는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과 방송법에 일부 흡수됨으로써 명맥을 이어왔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언론 환경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제주지역의 경우만 해도 1981년 일간 신문 1곳과 방송 2곳, 통신 1곳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일간신문 4곳, 방송국 5곳, 통신 2곳, 인터넷신문 2곳 등으로 늘었다. 언론매체의 숫적 증가, 언론수단의 다양화, 인터넷매체의 등장, 정보제공수단의 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환경은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제도를 가지고는 달라진 언론환경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 15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중재부의 경우는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문을 열었다.

II.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

언론중재위는 그동안 언론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또는 언론중재와 반론권 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수요는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와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피해나 분쟁의 심각성도 더 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독자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파급효과가 어떤 것보다도 크며, 회복하기가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책임에 대한 요구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으며, 언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월 1일에 제정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정간물법과 비교해서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포괄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 했다.
- △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해서 실질적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명시했다.
- △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 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이도 정정보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 △ 중재위원의 숫자를 8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확대했다.

III. 언론중재법의 신설 제도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조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고,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인격권의 보장

가) 인격권의 정의

언론중재법은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에서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통해 언론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격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항도 함께 명문화하고 있다.

나) 사망자에 대한 인격권 보장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장하고 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사망 후 30년까지는 언론피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3. 언론사내 고충처리인 제도 신설

언론중재법은 제6조에서 옴부즈맨 제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신설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하며,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언론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신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자격을 강화했다. 이 역시 위반했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5. 언론중재위원회의 기구 개선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숫자를 종전 40인 이상 80인 이내였던 것을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늘렸으며, 위원의 추천자격도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재위원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중재부에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을 두되, 지금까지 법관만이 중재부의 장을 맡도록 했던 것을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의 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도 중재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중재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정당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자,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공무원 가운데서 위촉할 수 없으며 중재위원이 관련된 중재사건이 있을 경우 제척사례를 명시하고 중재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만들었다.

위원회의 활동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IV.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언

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라고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를 말한다.(제2조10항)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는 크게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 추후보도청구로 나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까지 의미가 불명확했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림으로써 신청과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의 혼동을 줄였다. ‘사실적 주장’이라고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정정보도’라고 함은 방송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정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을 구하는 이유 및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한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언론사의 대표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 또는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게재해야 한다.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보도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언론사의 정정보도는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한다. 반론보도 청구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신청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구술이나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정정보도 등과는 달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그에 상당하게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기각·조정불성립 결정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직권조정 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 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재 신청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VI. 소송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소송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다. 언론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VII.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VIII.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1.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왔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이 언론중재법으로 통합됨으로써 구제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조정과 중재 절차의 분리

현행 중재절차는 조정에 가까워 중재와 혼동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본래의 의미인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정과 중재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손해배상청구도 조정·중재대상화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정간물법상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도록 했으나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 중재함으로써 언론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언론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 소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분쟁을 조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 신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과 달리 이에 따른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했던 점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신문은 종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해 정간물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구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오프라인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온라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다.

5. 중재신청 방법의 다양성

피해구제를 구술이나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케 하였다.

6.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종래의 정간물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를 채택했었다. 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으며,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했다.

7. 시정권고의 확대

현행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 자체 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져왔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는 물론이며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8.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놓고 있다.

가)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며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만을 강

조합으로써 언론의 본질성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

나)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할 윤리적 판단사항까지 법으로 강요하고 있다.

다)일간신문이나 방송의 책임정도와는 다른, 인터넷 언론들까지도 다른 매체와 동등하게 다룸으로써 인터넷 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도 앞으로는 정식 언론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기존의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점도 있다.

라)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시정권고의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데다가 시정권고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의 우려가 있다.

IX. 사례

1. <과학기술부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영남권의 연구개발 허브 기능을 담당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추진 과정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경과기원은 지난해 11월 범영남권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줄속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2일 설립위원을 위촉한 뒤 한차례 상견례만 갖고 경상북도 추천위원인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켰다. 과기부는 또 이의근 경상북도지사가 미국출장으로 인해 5월 20일로 예정된 대경과기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경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대구·경북과기원이 설립초반부터 삐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정관의 심의·의결은 설립위원들의 권한이며, 김시중 위원은 2차 회의 일정을 결정할 당시부터 해외출장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과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김시중 위원의 서면의견 제출을 고려하여 정관을 심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경과기원의 설립위원회 간담회 일정은 설립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경북도지사 해외출장으로 간담회 참석이 어렵다는 것과 경북도에서 간담회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설립위원회에 보고됐으나 이의근 지사 대신에 부지사의 참석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5월 20일로 간담회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문 내용이 게재됨.

2. <충청남도 전직 공무원이 정실인사에 의해 도 산하 장학회장 등으로 일하면서 많은 판공비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처리결과 : 합의

접 수 일 : 2004. 3. 16.

보도내용

충청남도가 심대평 지사의 퇴임한 측근들을 지나치게 챙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심 지사의 고교 동창 및 선배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가 하면, 70대 노인을 산하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장기간 앉혀 놓고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다.

도는 최근 김 모 전 정무부지사가 2002년 2월부터 회장으로 있는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 조 모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또 김 회장은 심 지사와 고교 동창으로서 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거친 뒤 2000년 12월 퇴임했다.(중략)

이 단체는 그동안 별다른 활동없이 사무처장 등 직원 4명의 월급과 회장 판공비 등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회장은 도 산하 장학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오찬규 의원은 두 단체의 판공비를 합치면 부지사 때의 판공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심대평 지사가 고교 동문들로 하여금 거액의 연봉을 지급받게 하려고 정실인사를 하여 신청인을 장학회 이사장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임명하게 한 것이나 조모 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심 지사의 정실인사가 아니며 조모 씨는 도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다.

또 장학회 이사장이나 협의회 회장은 각각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연금이나 판공비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지사 때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후략)

합의사항

반론보도문 게재

서울신문은 지난 2월 14일자 6면 『공무원 그만뒀도 철밥통 그대로』 제하의

기사에서 김 모 전 충남 정무부지사가 충남도의 정실인사에 의해 도 산하 장학회와 사회복지협회의 장으로 일하면서 부지사 때보다도 많은 판공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충남 정무부지사는 위 두 자리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월급이나 판공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부지사는 충남도가 조 모씨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사례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은 2003년 5월 개관한 조두남 기념관과 관련, 경남도민일보측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조두남 선생의 친일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마산시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인 문제로 시정(市政)을 비난한 언론보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는 2004년 4월 8일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이 경남도민일보와 비난기사 작성기자 및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친일 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피고들의 행동이 위법행위로 평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X.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가운데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95%를 넘었다.

<표1>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내 용	신 청 인	피 신 청 인
필요하다	95.4%	97.8%
필요없다	4.6%	2.2%
무응답	0%	0%
합계	100.0%	100.0%

<표2>언론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내 용	신 청 인	피 신 청 인
매우 편파적	7.8%	6.7%
편파적	14.4%	13.3%
보통	31.1%	22.2%
중립적	18.9%	40.0%
매우 중립적	27.8%	17.8%
무응답	0%	0%
합계	100.0%	100.0%

<표3>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

내 용	신 청 인	피 신 청 인
합의	3.14	3.20
불성립	1.50	3.19
취하	2.81	3.80
기각	1.67	4.25
각하	2.67	4.40

표1,2,3의 출처: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표4>손해배상 청구권의 중재권한에 대한 의견

내 용	일 반 시 민	언 론 인
바람직하다	56.5%	17.7%
시기상조다	23.0%	19.7%
불필요하다	12.0%	44.9%
비현실적 발상이다	8.5%	17.7%

<표5>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대 응 방 법	신 청 인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71.8%
법원에 소송제기	14.5%
해당매체에 적극 항의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1.8%
대응하지 않겠다	1.8%
기타	2.7%
무응답	0%

표4,5의 출처: 주동황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XI. 맺음말

이상으로 지난 1월 1일에 제정,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살펴봤다.

언론중재법은 1980년 12월 31일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태동된 언론중재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 오래전부터 입법이 추진돼오다가 2004년말 법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마침내 단일 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조정과 중재라는 개념조차 불명확했던 언론기본법과 비교할 때 그동안 언론중재제도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정간물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새롭게 마련한 것 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 처음 도입되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비춰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정권고 제도는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의 부합 문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며, 또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역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에 의한 해결은 독자와 국민들의 관심에서 한참 떨어진 뒤에야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미뤄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의 소극적 분쟁해결기관에서 적극

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